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6. 13 선고 2022가단618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병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변 론 종 결 2023. 3. 21.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2. 3.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2022. 5. 3. 접수 제333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 1) 원고는 2021. 3. 19.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 2)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21. 9. 28. “C은 원고에게 18,988,896원 및 그 중 10,791,87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21. 10. 16.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1차전24669).

나. C과 피고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

- 1) C의 아버지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3. 11. 사망하였고, C은 망인의 재산을 어머니인 피고 등과 공동상속하였다(C의 법정상속분 2/7).
- 2) 그런데 C은 피고를 비롯한 공동상속인들과, 피고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5.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상태

- 1) C은 이 사건 협의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원금 합계 47,413,000원 정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 2) 이 사건 협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은 3억 900만 원이고, 이 사건 협의 이전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6,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F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피고가 망인 명의로 취득한 피고의 고유재산이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피고가 식당 운영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망인 등 가족들을 부양한 점과 C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기여분이나 C의 특별수익 등으로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오히려 피고 스스로 C이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2016년경부터 피고에게 얹혀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의 선의항변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2/7 지분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경

별지